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6
----------	-------

제출년월일 : 2013.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나. '13년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처리단가 인상 및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수수료 현실화와 구 재정건전성 제고

2.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 1) 기본원칙(제4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 2) 관계자의 책무(제5조, 제6조 및 제7조)
 - 마포구 :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주민, 사업자 :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 협력
 -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 신설(제8조)
 - 마포구 :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우수가구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 사업자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 명시(제9조)

- 1)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
-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및 부과방법 반영
-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변경
 - 단독주택 : 40원/L (사업장 : 50원/L)
 - 공동주택 : 90원/Kg

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 1)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제2조)
 - 감량의무이행신고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제8조, 제16조)
- 2)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 실시
 - 위탁 재활용 처리업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지불(제9조)
 - 다량배출사업장 전용수거용기 사용(제15조)
 - 사업장과 위탁 재활용 처리업자간 계약서 작성시 처리수수료 명시(제16조)
- 3)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와 발생억제방안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제16조, 제17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13. 4. 25. ~ 5. 15.)결과 : 제출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관련조문	평가기준	검토 결과	조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제2항(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②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수부담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또는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주택은 90원/kg으로, 단독주택은 40원/L으로 산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자치구 ‘처리비용 대비 주민 부담률’과 비교해 본 결과, 공동주택은 자치구 평균이 66%인데 비해 우리구는 60%, 단독주택의 경우는 자치구 평균이 49.4%인데 비해 우리구는 38.1%로 주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수료의 부담이 적정함. 	해당없음

다.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라. '13년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13.5.24)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음식물류폐기물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비용 인상이 불가피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중략-
 -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별표1로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구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부담률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이로 인해 추가되는 예산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서세식
연 락 처	02-3153-92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를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이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 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는 세대별로 수수료를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도 종량제 시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내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신고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9조제2항,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전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9조 관련]

일반주택 및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가격

(단위 : 원)

구분	일반가정용(40원/L)	사업장용(50원/L)
1ℓ	40	-
2ℓ	80	
3ℓ	120	-
5ℓ	200	250
10ℓ	400	500
20ℓ	800	1,000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분	단위	수수료
공동주택	kg	90원

[별표 2]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 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게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폐기물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⑰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활용			
		자가처리방법	자가처리량	처리량누계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자	누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u>	이 조례는 <u>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u>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u> (신설) 2 "음식물류 폐기물 <u>감량의무사업장</u> "이라 함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u>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u>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u>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u>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u> 3. "음식물류 폐기물 <u>다량배출사업장</u> "이란 <u>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u>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u>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u>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u> 3. "음식물류 폐기물 <u>다량배출사업장</u> "이란 <u>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u>

현행	개정안
<p><u>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u>)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p> <p>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u>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u></p> <p>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라 함은 <u>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u></p> <p>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u>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u></p>	<p>(삭제)</p> <p>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u>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u></p> <p>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p> <p>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u>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u>)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u>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u></p>

현행	개정안
(신설)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p> <p>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p>
(신설)	<p>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신설)	<p>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p>
(신설)	<p>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p> <p>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p> <p>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신설)</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p> <p>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u>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 13조 및 제15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u></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u>다만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u></p> <p>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3. <u>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u></p>	<p>② <u>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u></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u>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u>”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p> <p>(삭제)</p> <p>2. <u>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u>감량 부산물</u>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u>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u> <u>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1. 별지 제1호서식의 <u>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u>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u>감량의무이행계획서</u>를 접수 후 즉시 <u>신고필증을 교부</u>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2. <u>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u>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u>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u>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u>수분이 건조된 부산물</u>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u>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u>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1호서식의 <u>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u>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u>신고증명서</u>를 교부하여야 한다.</p> <p>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u>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u>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u>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u>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p> <p>3. <u>감량의무이행계획서신고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u>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p> <p>4. <u>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u>을 별지 제2호서식의 <u>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u>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u>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u>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신설)</p> <p>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u>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구보를 통하여</u> 공고하고, 주민에게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p>	<p>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p> <p>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u>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u>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를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신설)	<p>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이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p>
(신설)	<p>⑤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신설)	<p>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규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규격봉투는 일반종량제규격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p>⑦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규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규격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 라 한다)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③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p> <p>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별표2의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으로 정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p> <p>②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p> <p>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는 세대별로 수수료를 배분할 수 있다.</p> <p>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도 종량제 시행을 하여야 한다.</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u>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u>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구청장과 협약하여 재생 처리하는 축산농가, 음식물류 폐기물을</u></p>	<p>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구청장은 관내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u>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과태료부과·징수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p>	<p>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p> <p>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p> <p>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p>

□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검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2010. 9.16 예규 제418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및 항목 변경 ○ 배출방법위반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항목의 기준을 배출하는 자별로 세분화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폐기물관리법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는 경우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5	10	2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지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별 제 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별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	60	80	100

- 현행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이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를 배출지별(개별배출, 공동배출)로 세분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상향 조정

<p><신설></p>	<p>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 발생억제방안 조항(제8조) 신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항목 신설</p>
<p>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별제12조관련)</p>	<p>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100	20	
300	30	
500	50	